

일 반 시 방 서

이노플라자 기숙사 환경개선 작업

2024. 4.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목 차

- 일반 시 방 서

0. 시 설 개 요
1. 일 반 사 항
2. 공 사 계 획 및 관 리
3. 제 출 물
4. 자 재 관 리
5.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6. 준 공

- 특 기 시 방 서

1. 총 칙
2. 도 배 공 사
3. 바닥재 공사
4. 세면장 환경개선 공사
5. 준공청소 및 폐재류 처리

일 반 시 방 서

0. 시설 개요

공 사 명 : 기술원 기숙사(이노플라자) 환경 개선작업(도배,장판교체 및 내부 정리 각종 금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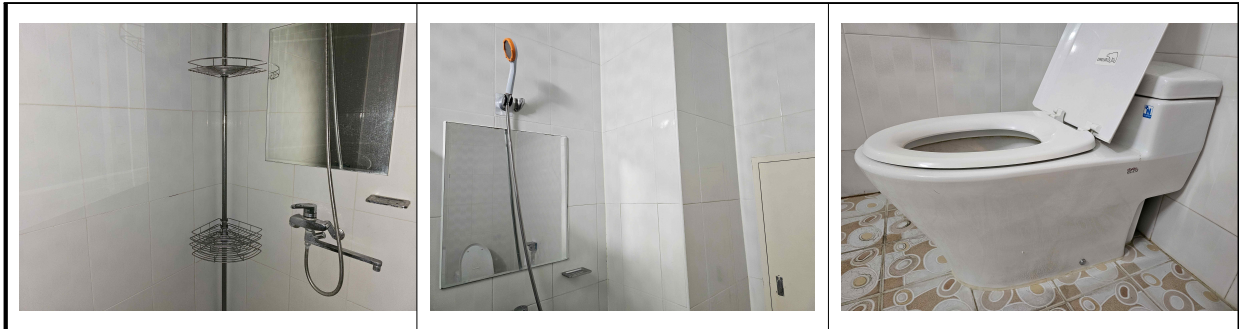
시공장소 : 이노플라자 401호~414호(14개실)

시공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참여 가능

건물명	호 실	비 고
이노플라자	401~408호(4인실)	도배 및 장판 교체
	409~414호(2인실)	도배 및 장판 교체
	이노플라자 기숙사 (401~414호) 환경개선	집기비품 폐기정리 세면장 화장실 크린 청소 관련공조, 위생기구 청소 욕실 금구류 코너선반장설치

※ 현장사진





위생금구류(수전 외) 교체 및 욕실 대(준공)청소



폐기물(가구류_침대, 옷장, 서랍, 협탁 등)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가. 적용

이 공사시방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원 기숙사(이노플라자 기숙사) 환경 개선작업(도배 및 장판교체) 및 기타 환경개선 작업에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공사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기술한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라. 공사감독자의 경유

건설업자 및 현장대리인의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공사감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나.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제1항 2호)

다. 특기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특기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제1항 3호)

라.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1항 3호)

마.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바.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사.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가.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 검토

- 1)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역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내역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다) 내역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마) 기타 건설업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3) 건설업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서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의 한계

-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3) 건설업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4) 건설업자의 현장대리인은 지급자재의 설치와 보관 등 지급자재를 인수받은 이후부터 준공 및 인수인계 시까지 상태를 유지하고 발생한 파손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 1) 건설업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 기간 동안의 상주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사기한 연장

가. 연기 요청일수

건설업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예정공정표 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1-6.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사유

건설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내역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발주처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가) 내역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발주처가 건설업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가)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나) 특정공종의 삭제
 - 다) 공정계획의 변경
 - 라) 시공방법의 변경
 -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3)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 4) "공사협의 및 조정 공사수행"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한 사항
- 5) "공사협의 및 조정협의 및 조절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 6)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 7)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나.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1-7. 관련 기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관련 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 한다.

-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 나. 자재시방서
-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1-8.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가. 계약문서(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 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 마. 국어사전

2. 공사계획 및 관리

2-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가.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의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 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의 안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2) 배관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배관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전기 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통신선로 등 관련 공사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기존시설물의 보존

건설업자는 역사 내 기존시설물의 이설 또는 보존하여야 할 시설물은 미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2-2. 시공전 협의 및 조정사항

가. 연관공사 간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나.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축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2-3. 시 공

가. 환경개선 및 보수

1) 작업 준비

가) 환경개선 작업 착수전에 폐기 및 정비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안전하게 조치

나) 작업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양 및 청소를 이행한다

다)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및 사전조치 검토한다.

2) 시공

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나)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

다)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

3) 청소

가)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

3. 제 출 물

3-1. 제출절차

가. 협의 및 확인

- 1) 건설업자는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한다.
- 2)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건설업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공사 사진

가. 비치 및 제출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준공 시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촬영 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체를 촬영하여야 한다.

4. 자재 관리

4-1. 적용 기준

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내역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 1)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 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나. 사용제한

품질기준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다.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사용한다.

라. 단일규격자재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4-2. 반 입

가. 반입시기

- 1)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4-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5-1. 적 용

가. 적용범위

- 1)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 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 1) 건설업자는 공사장내의 건설업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에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질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건설업자가 책임을 진다.

2) 건설업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통행인은 물론 역사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1) 건설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동 법령에서 규정된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출입자 통제 등

건설업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2. 안전검사

가. 안전검사

공사 중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내역서와 상이한 현장

나. 안전상태 점검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건설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한다.

5-3.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건설업자는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분진방지

철거공사 등 분진 발생 우려가 많은 공사시 집진기(이동식 집진기 등)를 설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집진기 설치가 어려울 경우 분진방지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발주처에 사전보고 후 시행 하여야 한다.

다.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건설업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6. 준공 관리

6-1. 준공(예비)점검

가. 발주처는 준공예정일 3일전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건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예비 점검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한다.

6-2.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공사계약서류"에 따른다.

나. 준공검사 내용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 6) 제출물 및 행정서류 처리상태
- 7) 부대시설공사 진행상태
- 8)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6-3. 준공 서류

가. 종류 및 내용

-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역서
 - 가) 당해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내역서
 -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 2) 제출물 시공 상세 내역서
- 3) 제출물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계약서류"에 따른다.

6-4. 준공 청소

가. 청소

1) 방법

- 가) 입주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 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 다)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 라)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 마) 지붕, 트렌치, 홈통, 오물,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 바)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 사)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서

[도배공사]

1. 적용 범위

- 1) 도배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51 05 (1.1)에 따른다.
(기존 합지도배의 일반 시공규정과 현장 시공성을 감안하여 시중 실시시공 방안으로 시행한다)

2. 관련 기준

- KCS 41 51 05 도배공사
- KS F 3217 벽지용 전분계 접착제
- KS M ISO 536 종이 및 판지 - 평량 측정
- KS M 7302 장판지, KS M 7303 갈포 벽지, KS M 7305 벽지
- KS M 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분석 방법

3. 제출물

- 1) 제품자료
 - ① 도배지 및 장판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조건표)를 감독관의 지정 및 색상에 따른다.
- 2) 시공계획서
 -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 상 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 3) 견본
 - ① 제품견본을 제출하여 재질별 색상, 무늬, 마무리, 치수 등에 관해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보증

- 1) 도배지, 장판지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 보수예비품

- 1)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예비품의 수량은 종류별로 총 소요량의 5%를 준공 전에 확보하고, 하자보증 기간에 한하여 요구 시 공급한다.

6. 자재

- 1) 도배공사의 관련 시행의 일반시공규정에 준하여 시공한다..
- 3) 도배공사의 장판지는 KCS 41 51 05 (2.3)에 따르며, 시공일반사항을 준용한다.
- 5) 도배공사의 붙임용 접착제는 KCS 41 51 05 (2.6)에 따르며, 특기 사항을 준용한다.
- 6) 도배공사의 기타재료는 KCS 41 51 05 (2.7)에 따른다.

7. 벽지

- 1) KS M 1991 (합성수지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방법)에 따라 합성수지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질벤질 프탈레이트(BBP)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8. 도배지

1) 합지벽지

KS M 7305에 적합한 것으로 중량[백상지+중질지(백상지)]이 180 g/m² 이상으로 폭은 900 mm 이상이어야 한다.

표 2-9 도배지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시험방법
일관견뢰도(급)		4 이상	KS M 7305
마찰견뢰도(급)		4 이상	
습윤강도 (N/15mm)	가로	1.96 이상	
	세로	1.96 이상	
은폐성		3 이상	
시공성		들뜸 및 벗겨짐이 없을 것	
내황화성(급)		0.125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mg/m ³ h)		0.015 이하	측정 : 소형챔버법(FLEC) 분석 : TO - 11A법

9. 공법 (관련 내용 시행시 참조)

1) 도배공사의 공법은 KCS 41 51 0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존시공의 일반시공법으로 부품 ,도배지 이완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 ② 불 필요 부위의 접착도포 주변부 오염을 방지하고, 천장 등 위험 부위는 작업 발판을 견고히 설치한다..
- ③ 천정 등 주변부와 연결부는 미려하게 접착 마감한다.
- ④ 작업시 물먹임 작업으로 기존 가구와 기물 오염 방지시 보양 후 작업한다.

2) 초배시공의 경우시

- ① 10mm 이상 겹침이음으로 시공하고 풀을 초배지에 고르게 도포하여 붙인다.
 - ② 석고보드 바탕면은 이음새에만 폭 100mm 초배지로 1회 바른다.
- 3) 수평방향으로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수직방향은 모서리에 이음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4) 스위치 커버플레이트, 조명기구 부착부위 등은 도배지를 바른 후 설치한다.

10. 현장 뒷정리

- 1) 이음부에 묻어난 접착제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 2) 장판지, 종이, 직물 벽지 붙임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신장,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지나 갱지로 철저히 보양한다.
- 3) 장판지 위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초배를 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바닥재 공사]

1. 적용 범위

- 1) 바닥공사의 적용 범위는 숙소용 장판 립 지정품으로 시공한다.

2. 관련 기준

- KCS 41 51 03 바닥공사
- KS F 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3. 바닥공사 일반

- 1) 바닥공사 일반은 기존 바닥재 철거 및 뒷정리 바닥 청소 후 시공한다.
 - 바닥의 요철 및 훼손 부위는 면 보강 처리후 바닥재 설치한다.
 - 바닥재의 가장자리부위 본딩 및 연결부 본딩 처리시 이완 및 변형이 없도록 시공한다.

4. 자재

- 1) 바닥공사의 자재는 기존 바닥 비닐계 립 계통의 지정 규격품으로 시공 (자재)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현장과 일반 시공방법을 준용하여 시공성과 품질시공에 최선을 다한다..

2) 바닥재 품질

바닥재의 종류 및 두께, 규격 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아래 규정된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가. 규격 : 지정규격 지정문양

나. 디자인 및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

5. 현장 뒷정리

1) 청소 및 보양

- ① 이음부에 묻어난 접착제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 ② 장판지, 종이, 직물 벽지 붙임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신장,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지나 갱지로 철저히 보양한다.

[세면장,욕실 환경개선공사]

1. 적용 범위

- 1) 세면장 욕실은 천장판, 공조용환풍기, 벽체, 각종 위생기구, 바닥청소 크린 청소로 시행한다.

2. 관련 기준

- 욕실청소 및 각종 위생기구 금구류 정비 및 보완사항 체크 및 정비 순으로 실시한다 .
- 욕실내 샤워수전 및 걸이 재 고정 및 개체공시로 시행한다
- 청소 시 향균 및 무오염성 세제로 청소 및 마감에 임하고 친환경성 용품사용을 우선한다.
- 관련설치 기구 및 자재는 통일성과 효율성 구조적 견고함에 우선한다.

3. 기타일반 사항

- 1) 환경개선의 쾌적성과 보건위생상 청소 및 시설개선규정에 따른다.

[준공청소 및 폐재류처리]

1. 적용 범위

- 1) 내실 및 화장실 내부정리 청소 및 각종 폐재류 반출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2. 관련 기준

- 각실별 크린청소 및 내부정리 규정
- 각종 폐재류 및 훼손가구류 처리 규정
- 관련 작업의 연관성 및 청소 및 뒷정리

3. 기타공사 일반

- 1) 공사 및 청소 후 기존시설 훼손 변형 없이 보양 및 주변부 관리에 철저히 시공한다.

2) 품질 성과

- 가. 시각적, 물리적, 보건적, 환경개선 상태의 장기간지속 유지
- 나. 관리적 측면의 경제성 향상과 입주자의 복지만족으로 환경개선 작업 효과 기대
(자재 및 시행 상 요구사항 점검) 성실한 시행시공, 시공제품 품질의 극대화

4. 현장 뒷정리

1) 마감 뒷정리

- ① 작업 후 관련기기 뒷정리 및 재위치,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 ② 작업 후 안전장치, 보안 및 시건장치 철저, 훼손 및 관련 도난 등에 대비 인수인계 철저